

-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

專門委員 檢討報告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05년 8월 29일

□ 제안 이유

○ 우리도의 핵심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현금 및 현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법인 설립등기일에 폐지하고, 폐지일 현재 특별회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현금은 전액 출자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소유재산중 오창벤처임대공단(28필지), 바이오 교육문화회관(4필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3필지)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물출자

○ 현금출자액 : 20,359,265천원

○ 현물출자액 : 33,498,272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평가액
계	151	167,651 ^{m²}	33,498,172 ^원
밀레니엄타운 부지	47	100,926	14,843,763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95	48,634	12,153,680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	18,091	6,500,729

※ **현물출자 자산평가 방법**

- 밀레니엄타운 부지 : 토지수용시 보상금액
-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 미납액
-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 택지 : 금융기관 평가액 참고 결정

□ **검토 의견**

-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채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서 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는 정관에 자본금을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 수권자본금을 2천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설립자본금은 출자계획안에 의하면 현금 203억 5,926만 5천원과 현물 334억 9,817만 2천원을 합하여 총 538억 5,743만 7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329조제1항과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상법 제289조제2항에 따라 설립자본금은 538억원으로 하고 수권자본금¹⁾은 이의 4배정도에 해당하는 2천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²⁾
- 그리고, 설립자본금은 전액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회계 자산중 밀레니엄 타운 부지내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건립예정지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충청북도가 조성하여 벤처기업에 임대중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임대공단 부지,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는 출자에서 제외되었으며,

(표 - 1) 출자제외자산 현황

구 분	면 적	금 액	비 고
오창벤처임대공단 부지	28,675평(28 필지)	12,306백만원	취득가액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부지	1,963평(4 필지)	1,963백만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	67,836평(3 필지)	18,530백만원	"

- 1) 授權資本金은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주식총수 또는 주식금액의 총계를 말하며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수권자본제도하에서는 수권자본총액에 대한 주식을 회사설립시에 인수할 필요가 없고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보호도 소홀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 2)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현물출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2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미분양용지는 2개금융기관의 평가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연부용지는 미납금액을 현물로,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보상가액(취득금액)을 평가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연은 충청북도가 직접 경영으로 조성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산을 같은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공사에 출연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출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금출자액을 203억 5,926만 5천원으로 확정하면서, 출자계획안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법인 설립 등기일에 폐지하고, 폐지일 현재 특별회계 현금은 전액 출자한다』라고 함으로써 추후 특별회계를 최종 결산했을 때의 현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차액에 대한 처리계획내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또한, 현물출자 평가방법에 있어서 연부용지 미수금은 債權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을 현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와 밀레니엄타운부지 매입은 2001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평가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매입시점의 보상가액으로 평가금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1부.